[별표 5]

공해방지시설(제14조제2항관련)

구 분	적 용 범 위
1.집진시설·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	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가스·먼지·매연·악취등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
2.폐수처리시설	가.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나.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 및 오수정화시설
3.소음·진동방지시설,방음시설, 방진시설	소음·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·진동방지시설, 방음시설, 방진시설
4.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	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
5.폐유처리시설	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
6.탈황시설	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속에 함유된 황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

비고:공해방지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.